



Q&A

제품안전 질의응답

# Q&A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1**

생맥주 업소의 간판에 사용되는 네온싸인과 부착되어 있는 변압기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안전인증 대상인지, 인증대상이라면 한글 표시사항에 관한 부분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네온변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되나, 귀사가 수입하려는 50Hz의 네온변압기는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 전원정격(정격주파수)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6의 기타 필요한 표시(안전인증 마크, 안전인증번호, 제품명칭, 모델명, 정격전압, 제조업체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이중 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회의 기호,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곳, 애프터서비스 연락처) 및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정격, 정격무부하 출력전류, 정격출력전류, 단락전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를 해야 합니다.



## Q2

기존에 국내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전동공구(햄버드릴)의 사용전원 주파수를 50Hz로 변경표기하여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정격주파수 60Hz로 설계 및 제조되어 안전인증을 받은 전동공구(햄버드릴)는 60Hz 전원조건에서 해당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성 검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므로 반드시 60Hz로 표시하여야 하며, 동 표시사항(정격주파수)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표준전압(110/220/380V) 및 주파수(60Hz)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Q3

AC전원을 입력받아 AC전원을 Socket Outlet으로 출력시키는 전원분배기가 안전인증 대상인가요?

A

입력된 교류전원을 여러 개의 교류전원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가진 전원분배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품목에 해당됩니다.

## Q4

완구품목은 법적으로 사용연령 부분을 눈에 띄게 기존 색상과는 다르게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자율안전확인대상 '완구'의 연령표시 방법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6(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7-523호) '제1부 6.2.2 연령 구분 및 표시'에 따라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단위 포장에 주위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 적색글씨, 음양각표시 또는 주위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등)으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